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119구급상황센터 업무에 소아환자 안내 등 추가〉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382호)

2024.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도읍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6. 12.
3. 회 부 일 : 2024. 6.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소아과 감소 등 전국적으로 소아 의료인프라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소아 의료접근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음. 특히, 지방의 경우 소아 의료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진료대란이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응급실 과밀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119상황센터에서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안내·지도 및 진료병원 안내 등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 언제 어디서든 소아환자에게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나아가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119구급상황센터의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안내·지도 및 진료병원 안내 업무 추가(안 제10조의2제2항제7호 신설).

나.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안내·지도 및 진료병원 안내 등을 위한 의료기관 정보 활용(안 제10조의2제6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① 119구급상황센터의 업무에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안내·지도 및 진료병원 안내”를 추가하고, ② 동 업무를 수행할 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119구급대원 등에게 응급환자 <u>인송</u> 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 <u>인송</u> 등에-----
② 구급상황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119구급이송 <u>관련</u> 정보망의 설치 및 관리·운영	4. ----- <u>등을 위한</u> -----
5. ~ 6. (생략)	5. ~ 6. (현행과 같음)
<u><신설></u>	7. <u>소아환자에 대한 상담·안내·지도 및 진료병원 안내</u>

③ ~ ⑤ (생략) <u><신설></u>	③ ~ ⑤ (현행과 같음) <u>⑥ 소방청장은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안내·지도 및 진료병원 안내 등을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다.</u>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1. 119구급상황센터 업무에 “소아환자 상담·안내·지도 및 진료병원 안내” 추가

현행법은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119구급대원 등에게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함)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10조의2제1항),

구급상황센터는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상담, 이송병원 안내 등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10조의2제2항).

<현행법상 구급상황센터 업무(법 제10조의2제2항 각호)>

구 분	내 용
제1호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지도
제2호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
제3호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정보의 활용 및 제공
제4호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의 설치 및 관리·운영
제5호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중요사항 보고 및 전파
제6호	재외국민,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승객 등에 대한 의료상담 등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 구급상황센터 설치 연혁은 [참고자료] 참고

그런데,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감소, 24시간 상시 소아응급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 부족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소아 의료인프라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음¹⁾.

이에 개정안은 기존에 응급환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구급상황센터의 업무 범위를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 등으로 확대하여,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 검토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1) 보건복지부의 「소아의료 보완대책(2023.9.22.)」에 의하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은 2020년 71%에서 2023년 25.5%로 감소하였으며, 시간·연령·증상 등의 제한 없이 24시간 상시 소아응급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은 2023년 기준 92개소(22.5%)에 불과함. 또한, 2019년에서 2022년 4년간 전체 의원이 2,467개소 증가한 것에 반하여,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92개소 감소(2,227→2,135)하였음.

첫째, 개정안의 취지는 다양한 연령대의 환자 중 특별히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을 방지하고자²⁾” 소아환자가 구급상황센터를 이용하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인데, 개정안에 따라 구급상황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소아환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그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의료계에서는 18세 이하의 사람을 진료하는 진료과를 소아청소년과로 지칭하고 있고(「의료법」 제3조의3³⁾ 등⁴⁾),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⁵⁾), 「영유아보육법」에서는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영유아로 정의하고 있고(「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⁶⁾), 「청소년 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음(「청소년 보호법」 제2제1호⁷⁾).

-
- 2) 개정안의 제안이유 중 발췌(김도읍의원 대표발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면)
- 3)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는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생략)
- 4)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학회에 따르면 “소아청소년”의 범위에 대해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한 것은 없으나, 관련 교과서에서 소아청소년의 범위를 18세까지로 정하고 있다고 함.
의료계에서는 통상적으로 소아는 신생아(0~28일), 영아(1개월~12개월), 유아(1세~6세미만), 어린이(6세~13세)로 구분한다고 설명함.
- 5)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 7)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둘째, 소방청은 “소아환자에 대한 안내”의 내용에 약국안내, 의원안내, 병원안내 등이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고, 현행 「의료법」이 ‘의료기관’을 병원, 의원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⁸⁾을 고려할 때, 개정안 제10조의2제2항제7호 및 제6항의 “진료병원 안내”를 법률에 별도로 명시할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개정안에 대해 소방청은, 저출생 및 소아과 감소 등 소아 환자 진료 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현재 질병 상담 및 병·의원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8)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신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2. 소아환자 상담·안내·지도 및 진료병원 안내를 위한 소방청장의 응급의료통신망 활용 근거 규정

응급의료정보통신망⁹⁾은 전국 응급의료기관의 진료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처리, 분석하여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조¹⁰⁾),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이송기관 현황, 환자 기본정보 및 내원 정보, 응급환자의 진료·처치 등 결과 정보를 취급하고 있음.

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 등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이하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
2. 제2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업무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근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5조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주관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
연계기관	1. 중앙부처 : 소방청 2. 응급의료기관 : 408개소 (권역응급의료센터 40, 지역응급의료센터 125, 지역응급의료기관 243)
취급정보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이송기관 현황 2. 환자 기본정보 및 내원 정보 3. 응급환자 진료·처치 등 결과
소방청 구급상황센터에서 이용가능한 응급의료정보	응급실 병상, 중환자실 병상, 일반병실 병상, 감염입원 병상, 수술실 사용여부, 의료장비(인공호흡기, 조인공호흡기 조산아, 인큐베이터, 인공투석장비, 에크모, MRI, CT, 고압산소치료기, 혈관촬영기) 사용여부, 핫-라인 전화번호 등

※ 자료 : 소방청

현재, 소방청은 보건복지부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응급실 병상 현황, 수술실 사용 가능 여부 등 응급환자 이송에 필요한 응급의료정보통신망 내 정보를 이용하고 있음.

개정안은 소아환자 상담·안내·지도 등을 위해 소방청장이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소아환자 상담·안내·지도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현행법은 ‘응급환자’를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법 제2조제5호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구급상황센터에서 활용하고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①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안내·지도, ②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로 제한하고 있음(법 제10조의2제2항제3호)

소방청이 구급상황센터를 통해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안내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정보통신망 내의 환자 기본정보, 이송 가능한 병원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 제10조의2제2항제7호의 내용을 입법적으로 수용하는 경우 응급환자 외에 소아환자의 상담·안내·지도 등을 위해서 응급의료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351

참고

구급상황센터 설치 연혁

2012년 이전에는 소방청이 응급환자 신고접수, 이송 기능을 담당하고,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정보센터(이른바 1339)”가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 상담, 이송병원 안내 등을 담당하였음.

그러나,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2012년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개정¹¹⁾되면서 기존에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던 응급처치 지도, 이송병원 안내 등의 기능이 소방방재청(現소방청)의 119구급대로 이관되었고 통합컨트롤타워로서 구급상황센터가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임.

<구급상황센터 설치 연혁>

소방방재청(119구급대)	보건복지부(응급의료정보센터)
	○ 응급의료기관 평가 지원 등
○ 응급환자 신고접수·출동	○ 이송 중 응급처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
○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
○ 병원이송	○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지도



소방방재청(구급상황센터)
컨트롤 타워로서 기존 119구급대 및 응급의료정보센터 업무 수행 (단, “응급의료기관 평가 지원 등” 기능은 미이관)

※자료: 소방청

11) 법률 제11403호, 2012.3.21. 공포, 2012.6.22. 시행